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합55195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4. 4.

판결 선고2017. 5.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751,752원 및 그 중 206,659,759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14. 접수 제567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11. C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은 270,000,000원(피고 A이 대출받을 300,000,000원의 90%), 보증기한은 2012. 12. 11.부터 2013.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 기재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 ⑧ 그 밖에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위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피고 A이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피고 A이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그 밖에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A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나. 피고 A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12. 12.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2. 12. 24. 신한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6. 4. 1.로 정하여 300,000,000원의 B2B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의 연장

그 후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을 2014. 4. 4.까지로 1차 연장, 2015. 4. 3.까지로 2차 연장하였다가, 보증원금을 255,000,000원으로 감축하면서 보증기한을 2016. 4. 1.까지로 3차 연장하여 주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신한은행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C주유소를 폐업함에 따라 2016. 1. 4. 원고에게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의 범위

-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9.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55,832,396원(= 원금 255,000,000원 + 이자 832,3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한편, 원고가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49,172,637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은 206,659,759원(= 255,832,396원 - 49,172,637원)이 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에 충당한 49,172,637원에 대하여 13,471원(= 49,172,637원 × 10% × 1/365, 원 미만 버림)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 3) 그 밖에도 원고는 2016. 1. 15.부터 2016. 4. 26.까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명목으로 합계 1,247,263원을 지출한 후 그 중 1,168,741원을 회수하여, 현재 위 채권보전조치비용 잔액은 78,522원이다.

바.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증여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12. 14. 이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206,751,752원(= 대위변제금 잔액 206,659,759원 + 확정손해금 13,471원 + 채권보전조치비용 잔액 78,52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06,659,7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인인 2016. 11. 18.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12. 14.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C주유소를 폐업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A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총 227,687,982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5 지분 가액 합계 17,687,982원 + 인천 부평구 D 외 9필지 지상 E아파트 제122동 제9층 제903호 가액 210,000,000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총 558,500,000원 상당[=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무 원금 255,000,000원(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전구상금 채무 원금도 피고 A의 소극재산에 포함) + 위 E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4, 6, 7, 8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03,500,000원(피고 B도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다투지 아니함)]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 E아파트는 2016. 2. 13.자로 F에게 매도되었고 그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일부 채권을 회수할 때 원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49,172,637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위 금액만큼을 소극재산에서 공제하더라도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 A은 채권자인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거주하고 있던 위 E아파트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는 등(위 E아파트가 2016. 2. 13.자로 F에게 매도되고 그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 동안 선조들의 분묘를 안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 재산 가치가 크지도 아니하며 어차피 아들인 피고 B을 거쳐 후손들에게 계속 그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 A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자들의 경우 그 후손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피고 B의 경우처럼 해당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적은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 소유 지분의 가액 합계가 17,687,982원에 이르렀던 이상, 그 재산 가치가 크지 아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선조들의 분묘를 안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 소유 지분이 피고 A의 책임재산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은 피고 A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일 뿐이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들 선조들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증여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 소유 지분의 재산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A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인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증여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

판사양백성

판사박가람

별지